

# 서울특별시 시립구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02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년 8월 14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시립구로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,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·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로서, 우리 시가 사단법인 청소년교화연합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나,
- 나. 위탁기관의 의무불이행으로 위수탁 협약 해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,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 현재 위탁기관과의 위수탁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며,
- 다. 이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청소년 분야의 전문지식을 겸비하고, 활용 가능한 인적·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청소년 전문단체를 공모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및 부칙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시설개요

- 시설명 : 시립구로청소년수련관
- 소재지 :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 141
- 시설규모 : 연면적 4,986m<sup>2</sup>(지상 4층, 지하 2층)

- 개관일자 : 2002. 6. 1.
- 이용대상 : 청소년 및 시민

## 나. 위탁내용

- 위탁기간 : 3년 (2017. 10. 16. ~ 2020. 10. 15.)
- 위탁업무
  -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·운영
  - 청소년의 신체적·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
  -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
  - 학교,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지원사업 및 대안교육사업
  - 청소년수련관 관리·운영(시설물, 장비 등 포함)
  - 그 밖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소요예산 : 2,690,491천원('17년 예산)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재위탁

## 다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

- 민간위탁 추진근거
  - 청소년기본법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  -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(수련시설 운영의 위탁)
  -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  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제1호

○ 민간위탁 추진현황

- 1차 : 2002. 6. 1.~2005. 5.31. (3년,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)
- 2차 : 2005. 6. 1.~2008. 5.31. (3년,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)
- 3차 : 2008. 6. 1.~2011. 6.30. (3년,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,  
사단법인 청소년교화연합회 킨소시엄)
- 4차 : 2011. 7. 1.~2013. 6.30. (2년, 사단법인 청소년교화연합회)
- 5차 : 2013. 7. 1.~2016. 6.30. (3년, 사단법인 청소년교화연합회)
- 6차 : 2016. 7. 1.~2018. 6.30. (2년, 사단법인 청소년교화연합회)

라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수련관은 청소년활동·청소년복지·청소년보호를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고, 특히 2016년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진로 직업·창의적 체험활동 등 수련관을 이용한 학교연계 수업과 방과 후 활동 등이 대폭 증대되고 있으며,
- 구로청소년수련관은 최근 다문화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저소득층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바,
-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문화, 저소득층 등 다양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할 수 있고, 청소년 관련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○ **청소년기본법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**

-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○ **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(수련시설 운영의 위탁)**

-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·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○ **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**

-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

○ **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**

-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○ **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**  
: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시설팀 김진영 (☎2133-4121)